

자치구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22.01 ~ 2022.12		
사업내용	○ 정부의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변경 이후 재택치료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이송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1,475,000천원	(국비)885,000천원	(시비)59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295,000천원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행정국	자치행정과	강석 2133-5800	최충일 2133-5819	유혜영 2133-5831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1예산액 (A)	2022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885,000) 1,475,000	(x885,000) 1,475,000	(x100) 100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-) 0	(x885,000) 1,475,000	(x885,000) 1,475,000	(x100) 10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재택치료자 전원 및 (응급)이송비	=	1,225,000천원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
	(재택누계*전원율)*단가*12개월*정부예산조정비율*50%+(재택누계*전원율)*단가*12개월*정부예산조정비율*50%*2/3 ○ 전담조직 운영비 = 250,000천원 25개구*1,000천원*12*50%+25개구*1,000천원*12개월*50%*2/3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정부의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변경 이후 재택치료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이송비 지원

□ 사업근거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(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
 - 시행령 제27조 - 시도의 경비보조액은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-39895(21.12.9)호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 1. 1. ~ 12. 31
- 지원대상 : 자치구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반
- 주요내용
 - 재택치료자 전원 및 응급이송 등에 따른 이송비 지원
 - 자치구 재택치료전담반(전담조직)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
- 재원부담 : 국비 : 지방비 = 50 : 50 (시비 2/3, 구비 1/3)
- 소요예산 : 총 1,770,000천원
 - (국비) 885,000천원, (시비) 590,000천원, (구비) 295,000천원

□ 추진경위

- 서울시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(10.13.)
 - 시·구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
-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절차 변경(11.26.)
 - 모든 확진자 대상으로 재택치료 대상 확대
- 재택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
 -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(12.9.)

□ 2022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475,000	
자치구 재택치료 운영지원	2022.01~2022.12	1,475,000	재택치료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이송비 지급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안정적인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관리 및 회복 지원